

명예교수 규정

제 정 : 2015. 8. 1.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절차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격) ①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자로서 학문 또는 본교 발전에 공헌한 자
2.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교원으로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 학교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덕망이 높아 타의 모범이 되면서 본교의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자
3. 전임교원으로 정년퇴직한 자로서 공인연구기관의 장이나 전국규모 학회의 장을 역임한 자 또는 학술상 수상자
4. 본교 총장을 역임한 자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3 조(추대절차) ① 제 2 조 제1호의 대상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추대한다.

② 제2조 제2호 교원을 명예교수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학과(전공) 교수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당 부서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자를 명예교수로 추대한다.

제 4 조(구비서류) 소속 학부장이 총장에게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교수 추천 대상자의 이력서 1부
2. 연구실적 조서 1부
3.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 1부
4. 명예교수 추천 의견서(학과장) 1부
5.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제 5 조(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명예교수 추대 후보자의 연구실적 및 본 대학교에의 기여도를 심의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할 경우 총장에게 추천한다.

- 제 6 조(처우)** ① 명예교수에게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정규과목의 강의 위촉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학기말까지로 하며 학기당 1개 과목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강의시수는 학부, 대학원을 포함하여 주당 6시간 이내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에 대한 수당과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명예교수는 총장이 초청하면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7 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